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2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백선희 · 정춘생 · 황명선
이해민 · 정준호 · 박희승
이학영 · 서삼석 · 황운하
손명수 · 서왕진 · 신장식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민기반의”를 “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 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 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 다.	제2조(기본이념) ----- ----- ----- ----- -----.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u>문민기반의 확대</u>	1. ----- <u>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 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 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u>